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7-17호

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2-149호(2012.08.23.) 및 마포구고시 제2016-101호(2016.07.21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14-113호(2014.06.19.) 및 마포구고시 제2014-219호(2014.12.18), 마포구고시 제2016-124호(2016.09.13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망원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2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2월 2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명 칭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58-16번지 일대
- 2) 면 적 : 20,649.4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김준남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 88(망원동) 3층

라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7. 1. 25.

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(변경없음)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 (지하/지상)	주된용 도	비고
20,649.40	4,054.36	24.59	66,246.03	249.70	지하2층/ 지상18층	공동주택 (아파트)	3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변경없음)

구 분	규모별 (㎡)	건립 세대수	관리처분 대상자별 내역			비 고
			조합원 분양	일반분양	보류지	
공 동 주 택	합계	385	180	202	3	
	59.39	60	16	42	2	
	59.38	54	42	12	-	
	84.58	90	37	52	1	
	84.55	66	40	26	-	
	84.23	34	3	31	-	
	111.29	39	29	10	-	
	111.40	42	13	29		
상가	1075.04	MD 확정후 결정				

* 1세대1주택:176, 1세대2주택:2, 상가신청:1 (공급계획에서 제외)

3)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가.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없음)

정 비 기 반 시 설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	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	도로 (중(집)3-A)	12M,258M	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조합 / 설치후 무상귀속
	도로 중(집)2-39	15M~20M 2,168M	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조합 / 설치후 무상귀속
	공원	2,860.10㎡	망원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조합 / 설치후 무상귀속

나.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없음)

연번	소유자	지번	지목	실제 이용	면적(㎡)	무상양도 면적(㎡)	비고
1	마포구	망원동 216-1	공원	공원	488.00		
2	마포구	망원동 216-9	도로	도로	66.00		
3	마포구	망원동 216-13	도로	도로	13.00		
4	마포구	망원동 216-14	도로	도로	2.00		
5	마포구	망원동 239-7	도로	도로	268.00		
6	마포구	망원동 242-3	도로	도로	94.00		
7	마포구	망원동 242-6	도로	도로	155.00		
8	마포구	망원동 458-18	도로	도로	1,028.40	966.10	
9	마포구	망원동 458-43	도로	도로	171.60	171.60	
10	마포구	망원동 458-105	대지	도로	21.50		
11	서울특별 시	망원동 213-6	도로	도로	1.00		
12	서울특별 시	망원동 244-14	도로	대지	18.00		
13	서울특별 시	망원동 244-13	도로	도로	144.00		

4) 기존건축물의 철거시기 : 철거완료(변경없음)

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제5호에 의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에 대한 변경입니다.